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성 북 구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나, 2010. 4. 3.자로 상표등록이 소멸되어 조례의 존속 의미가 없음.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위원회 신설 관련 자치행정과 사전 협의(적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9. 19. ~ 10. 10.(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결과 : 의견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대상 아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브랜드 ‘트리즘’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장 이동환